



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1. 3. 30.
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
과 장 : 양 주 필
사무관 : 김 일 환
전 화 : 500-2102, 2103
쪽 수 : 2P
별첨자료 : 없음

이 자료는 2011년 3월 31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계란, 유통기한 확인하고 사세요

- 4. 1. 부터 계란 유통기한표시, 포장유통 의무화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신설 -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1일부터 계란(식용란중 닭의 알)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포장을 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여 유통판매 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고 밝혔다.

○ 이는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중 관련내용이 4.1.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, 앞으로 계란을 유통할 때는 ①포장을 하고 ②포장지에는 유통기한, 생산자명, 판매자명 및 소재지, 제품명, 내용량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.

※ 포장은 소매단위(1-30개 단위 권장) 또는 벌크(300개 이하권장) 형태 등 자율적으로 하되 포장재료는 위생적이어야 함.

※ 2012년 1월부터는 계란의 난각(계란껍데기)에 생산자명 표시의무화.

※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금년 1월1부터 닭·오리 고기를 전면 포장·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며, 4월 1일부터는 계란도 포장유통 실시토록 규정.

□ 아울러,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자는 4.1.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 법령에 따라 규정한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을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○ 이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계란을 포장유통 해야 함으로써 위생관리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.

※ 「축산법」에 따라 이미 계란집하업을 등록한 자는 이 제도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봄.

□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치로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, 관련 영업자의 위생관리도 제고됨으로써 식용란의 안전유통 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.